

2009. 04. 10(금)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4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 목 차 】

1.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2
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19
4.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6

<의안번호 제2009 - 7호>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3.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3. 30.

2. 제정이유

- 민선지방자치 이후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주민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위원회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추천 등 공개절차에 따름

-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주민참여 보장
-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
- 위원장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례화하도록 규정함
- 라. 회의자료 등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
- 마.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 받아 군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
- 바.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주민은 군 주요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하며,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1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함
 -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함

- 군수는 토론 결과 검토 후 반영여부를 1개월 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사.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견 조사 후 1개월 내에 조사 결과 및 견해를 표
명토록 함
- 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08. 12. 12 ~ 12. 31) 결과 : 별첨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거창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거창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 주민의 권리와 역할, 위원회에의 주민참여, 회의자료 등 공개, 주민제안, 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 청구 등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법"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정책토론 청구연서인원 검토[참고자료]

○ 유사법령 검토

구 분	근거법령	대 상	청구인원수	우리군 적용사례
주민소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전년말 기준 19세 이상	15/100이상	○ 자치단체장 : 7,635명 ※ 4개 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
주민투표 청구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2항	전년말 기준 20세 이상	1/5 ~ 1/20	<거창군주민투표조례> ○ 청구 인원수를 1/10으로 규정 ⇒ 50,116명/10 = 5,012명
주민조례 개폐청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전년말 기준 19세 이상	1/50 ~ 1/20	<거창군주민조례개폐청구조례> ○ 청구 인원수를 1/50으로 규정 ⇒ 50,898명/50 = 1,018명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	19세 이상	200명 이내	<거창군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청구 인원수 : 20세 이상 200명 이상

○ 타 자치단체 사례 검토

1/100 이상 (19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 (19세이상, 선거권 있는 주민)	300인 이상 (19세 이상 주민)	3/1,000 이상 (선거권 있는 주민)
○ 적용시군 - 영광군(청구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 500명 정도 ※ 제한규정 - <u>최소 5개 읍면 이상 1읍면 50인 이상 연서함을 규정</u>	○ 적용시군 - 함평군(청구일 현재 19세 이상의 시민), - <u>창원시 약산시 안산시 사항시</u> (선거권 있는 주민), - 순천시, 청주시(미규정) ※ 제한규정 - 함평군은 <u>최소 5개 읍면 이상, 1읍면 20인 이상의 연서함을 규정</u>	○ 적용시군 - 대전광역시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의 시민)	○ 적용시군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권 있는 주민)

<의안번호 제2009 - 8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3. 27.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3. 3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상위 법령이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정보공개 및 제 증명 등의 수수료를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1조).
- 나.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청구할 경우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의 중복내용을 정비하고, 자동차에 관한 수수료 징수사무 폐지에 따라 필요없는 징수기준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다.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이루도록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7조).

○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의 조정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
- 장애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상위 법령 인용 용어의 정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를“수급자”로 함

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따로 정하고 그 감면비율을 조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현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2종의 정보공개 청구건을 상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3종으로 따로 정하고,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하향조정함

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1).

-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사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수료 항목 신설

- 비료생산업 등록 : 1건당 3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 1건당 1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 폐지

-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실적증명(공사·제조)

바. 상위 법령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이루도록 정보공개 대상과 수수료를 조정함(안 별표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별표]의 수수료 항목 및 금액과 일치시킴
- 사. 별표의 제목과 관련 조항 및 서식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별표2, 별표 3).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2009. 1. 23 ~ 2.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각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그 수익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다른 자치단체와 정보공개대상 범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요율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사무위임과 관련된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등록 등 2건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임.
- 그런데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 제1항제3호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 제1항제4호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 제1항제9호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조례안 개정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요율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 제3항 제1호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와
 - 제3항제2호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에는 100분의 50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수수료를 전액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감면요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개정 1999.3.31>)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2007.8.3>

② 삭제 <19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3.31>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

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개정 1999.3.31>)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

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 11. (생략)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의안번호 제2009 - 9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3. 2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3. 30.

2. 제안이유

- 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협소 및 노후로 인해 충혼탑 인근 죽전 근린공원 예정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
- 관내 미 활용 폐교 매입을 통해 기업체 유치,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보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의 대중화, 저렴한 이용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우리군의 가조면 일대가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 및 체험장 3동 신축

3. 주요내용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m ²) (연면적)	공시지가/과세표준액(사업비)	비고
계		4건		533,611	11,970,840	
청소년수련관 신축	건물	거창읍 가지리 272-1번지 외 5필지	건물	2,785	5,187,000	
폐교부지 매입	토지/ 건물	웅양면 한기리 915번지 외 19필지	계	81,561	2,349,801	하성초등학교 외 5개소
			토지	74,967	1,860,174	
			건물	6,594	489,627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매입	토지	가조면 도리 산43번지 외 6필지	토지 (임야 7)	446,000	143,412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건물	거창읍 장팔리 산5-1번지외 3필지	건물	3,265	4,290,627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

5. 검토의견

- 청소년수련관 신축안은 연면적 2,785m²(지하1층, 지상3층)로 청소년들의 문화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노후 및 협소하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죽전 근린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 폐교부지 매입안은 관내 미 활용 폐교 중 매입대상이 되는 6개교 중 토지 74,967m², 건물 6,594m²로서

점점 황폐화 되어가는 학교 및 학교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기대에 알맞은 사업 및 기업의 유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안은 9홀 규모[사업비 210억(체육진흥공단 140억, 군비 70억)]의 사업으로 골프의 대중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의 추진에 우리군이 선정됨에 따라 가조면 도리 산43번지 외 6필지 446,000m²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2008년 11월 12일 후보지로 선정되어 2008년 12월 2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였음.

- 복합문화단지조성사업안은 거창읍 장팔리 일원에 연면적 3,265m²(문화원사 : 지하1층 지상3층, 전수회관 : 지하1층 지상1층, 체험장 : 초가집3동)를 문화관련 시설을 신축하여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는 2006년도(8,385 m²)와 2007년도에 추가로(2,839m²) 매입 완료하였음.
- 상기 4건의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 군의 청소년문화사업 육성발전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문화 예술 활동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9. 03. 31.
- 나. 발 의 자 : 이창도 의원 외 1
- 다. 회부일자 : 2009. 03. 31.

2. 제안이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뜻을 정의함(안 제3조)
- 나. 장기기증의 범 군민 확산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 다. 장기기증 접수창구와 장기기증 등록창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라.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추경예산 반영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운명하실 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생명나눔운동을 장려하여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